

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의2서식] <신설 2022. 12. 29.>

[]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

[]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합니다.

| | | |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시 | 처리기간 | 10일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|

| | | |
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청인 | 명칭 |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(유치사업자) 등록번호 |
| | 대표자 성명 | 연락처(휴대전화) |
| | 소재지 | |

[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변경사항]

| 구 분 | 변 경 전 | 변 경 후 | 변경적용일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의료기관의 명칭 | | | |
| 의료기관의 주소 | | | |
| 의료기관의 대표자 성명 | | | |
| 진료과목별 전문의 | | | |
| 의료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| | | |

[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변경사항]

| 구 분 | 변 경 전 | 변 경 후 | 변경적용일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사업자의 명칭 | | | |
| 사업자의 주소 | | | |
| 사업자의 대표자 성명 | | | |
| 보증보험가입 | | | |
| 자본금 | | | |
| 국내사무소의 설치 | | | |

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(유치사업자)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| | | |
|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|
| 신고인 제출서류 | 1.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가.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나.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.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가.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 나.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| 수수료 없음 |
|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| 1.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. 전문의 자격증(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| |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 절차

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
| 신고서 작성 신고인 | → | 접수 시·도 | → | 서류 검토 시·도 | → | 변경사항 기재 시·도 | → | 확인·날인 시·도 | → | 등록증 발급 시·도 |
|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